

서 면 답 변 서

※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유인환 위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건설방재과장)	답변일자	2008. 12. 05
담 당 자	지방전산9급 박유진		

질문요지

- 재난관리기금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과 09년 최저적립액 산출근거 및 내역

답변내용

- 재난관리기금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과 09년 최저적립액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- 아 래 -

- ①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

2005년	2006년	2007년
12,308,595,067원	14,996,350,301원	17,617,630,080원

- ② 09년 최저적립액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

가. 법적 근거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67조 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나. 산출 내역

산출내역
$((12,308,595,067원+14,996,350,301원+17,617,630,080)÷3) × 0.01$ $= 149,741,918원$